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물류기업 등이 의약품·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(이하 정온물류)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물류정책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82호, 2023. 4. 18. 공포, 10. 19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).

또한, 시·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·폐업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상호 및 주소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(안제31조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정온물류를 위한 물류 공동화 지원)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
목에서 “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”이란 다
음 각 호의 품목 중 정온(定溫)물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축산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
2. 반도체 및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소재·부품·장비
3.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소재·부품·장비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

제31조 중 “「소득세법」 제168조제3항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3항 또
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”를 “성명, 주민
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상호 및 주소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
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2(정온물류를 위한 물류 공동화 지원) 법 제23조제3항제 2호다목에서 “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”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 중 정온(定溫)물류를 필요로 하 는 것을 말한다.</u> <u>1. 「축산법」 제2조제3항에 따 른 축산물</u> <u>2. 반도체 및 반도체의 제조 공 정에 필요한 소재·부품·장 비</u> <u>3.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의 제 조 공정에 필요한 소재·부품 · 장비</u> <u>4.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</u>
제31조(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) 시·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 류주선업자의 휴업·폐업에 관 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 자의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제3	제31조(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성명, 주민등록번호, 법인</u>

<u>항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3항</u> <u>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</u> <u>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</u> <u>를 명시하여야 한다.</u>	<u>등록번호, 상호 및 주소 등 사업</u> <u>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-----</u> ----- -----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	
연 락 처	(044) 201 - 4013